

# UR 농산물 협상의 현황과 전망

이재옥 / 농촌경제연구원

## I. UR 농산물 협상의 개요

### 1. 농산물 협상의 대두배경

○1970년대까지의 식량위기시대에서 1980년대의 식량과잉공급시대로 전환

- 수출국의 생산능력 증대 및 개도국의 식량자급
- EC 수출국으로의 전환
- 개도국의 식량수요 감소

○과잉생산→재고누증→수출보조금의 경쟁적인 지급→세계 농산물 교역질서 왜곡현상 초래

- 농산물 수출국가의 재정압박
- 단기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과잉문제라는 의식 팽배

○1980년대의 새로운 분야로 등장한 서비스, 지적 소유권 등의 교역문제와 농업문제의 해결을 위해 UR 협상 시작

## II. 농산물 협상의 내용

### 1. 주요 협상의제

#### (1) 협상목표 및 이행방법

○협상목표 : 공정하고 시장지향적인 농업무역체

계의 확립

○실천목표 : 자유무역원칙에 입각한 새로운 GATT 규범의 제정 및 농업보호 및 지지수준의 상당한 감축

○이행방법 : 보조측정장치(AMS)를 통한 감축과 특정보조정책의 감축

○단기목표 : 농업보호조치의 현수준 동결(standstill)

#### (2) 주요 협상의제

##### ① 국내보조(Internal Support)

○농산물 생산 및 교역에 영향을 주는 모든 형태의 보조금 감축 내지 철폐(가격 및 소득보조, 유통보조, 생산요소보조, 투자 및 이자보조 등)

○특정품목이나 생산에 직접적인 연계성이 없는 국내보조는 허용(연구 및 지도사업, 재해보상, 농민 연금 등)

##### ② 국경보조(Border Protection)

○관세 : 농산물 관세인하 및 양허의 확대

○비관세 : 수입할당, 수입추천, 정부 독점조달수입 등 모든 비관세조치의 관세로의 전환(Tariffication)과 전환된 관세의 감축(가입의정서, Waiver, 변동부과금제도 포함)

③ 수출경쟁(Export Competition)

○수출보조금의 감축 내지 철폐

④ 식품위생 및 동식물검역

○관세 국제기준(IEO, IPPC 등)에 합치 운용함으로써 무역규제의 최소화

⑤ 식량안보 등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(Non-Trade Concerns)

○식량의 비교역적 관심사항으로 인하여 최소의 농업 및 식량자급률은 보호, 유지되어야 함.

⑥ 개도국 우대조치(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)

2. 주요국의 기본입장

	수출국	수입국
선진국	<p>[선진수출국]</p> <p><b>미국</b> • 농산물교역의 완전 자유화</p> <p><b>EC</b> • 현행 농업보호 관계 유지 • 보호 및 지지의 상당한 감축</p> <p><b>캐언즈그룹(13개국)</b></p>	<p>[선진수입국]</p> <p><b>일본, 스위스, 북구, 오스트리아</b></p> <p>• 적정수준의 농업보호 유지</p> <p>•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의 강조</p>
	<p>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우루과이 알젠틴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헝가리</p> <p>[수출개도국]</p>	<p><b>한국</b></p> <p>• 적정수준의 농업보호 유지</p> <p>•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의 강조</p> <p>• 개도국 우대</p> <p><b>이집트, 자마이카, 페루 등</b></p> <p>• 개도국 우대</p> <p>• 식량원조 및 보상의 확대</p> <p>[수입개도국]</p>
개도국		

3. 주요 의제별 논의사항

(1) 국내보조(Internal Support)

○모든 국내보조정책을 감축대상과 허용대상으로 구분

-가격 및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모두 일정기간내 점진적으로 감축

-여타 대상정책도 일정한 조건하에서만 허용

○수출국측은 감축대상정책의 확대를 주장한 반면, 수입국측은 허용대상정책의 확대를 주장하고 있어 의견대립

-특히 우리나라는 식량안보 등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수행에 관련된 보조정책은 허용대상이 되어야 함을 강조

(2) 국경조치(Border Protection)

○모든 비관세장벽의 관세화(Tariffication)에 일관적 의견 접근

-EC는 보완장치를 인정하는 것을 조건부로서 수용

-수입국(우리나라, 일본, 스위스)은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유지로 필요한 품목에 대하여는 관세화에 반대

○모든 국가가 유지하고 있는 수입수량규제 등 비관세조치를 철폐하는 대신 국내가격과 국제가격과의 차이에 고율의 관세상당액(Tariff Equivalent)을 부과

-합의기간내 관세상당액을 점진적으로 감축

○관세화와 동시에 저율관세만 부과하는 최초 쿼타(Tariff Quota)를 부여하고 매년 증량

(3) 수출경쟁(Export Competition)

○수출보조금의 철폐 또는 감축에 대한 미국, EC간의 의견대립 심화

-미국: 농산물 수출보조금의 합의기간내 완전철폐

- EC : 국내보조, 국경보호조치와 함께 동등한  
규율하에 감축

#### (4) 비교역적 고려사항 (Non Trade Concerns)

○우리나라, 일본, 스위스 등 수입국은 NTC 목적을 위한 농업보호의 당위성을 강력히 주장하였으나, 여타 수출국측은 계속 예외조치 반대

○농산물그룹 의장의 NTC에 대한 절충안(우리나라 대표단과의 비공식협의를 제안)

-수입국중 우리나라, 일본, 스위스 3국만이 NTC에 의한 예외를 고수하고 있음을 강조

- NTC 대상품목의 관세화는 필연적 추세이므로 관세화 과정에서의 반영방안을 강구

### 4. 우리나라의 기본입장

#### (1) 우리나라의 협상요건

○농수산물 수입국으로서의 위치, 경제발전 수준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협상국으로서 발언권이 매우 위약

-국가전체적으로 GATT의 교역자유화를 지지해야 할 입장이나 농산물 분야만은 국내 농업보호를 위해 최대한 예외를 인정받아야 할 상황임.

- UR 농산물 협상은 미국, EC 등 수출강대국 주도로 추진됨으로써 수입국 농업에 대한 예외적 보호조치를 인정않는 방향으로 전개

-우리나라 경제발전 수준은 '90년대초 선진국 진입이 예상되고 있어 여타 개도국과 공동보조를 취하는데 한계

○농산물 교역자유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필수농산물의 보호근거를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.

- '89.10 GATT/BOP 졸업결정과 관련, 잔존 수입제한품목(410개)도 '97년까지 자유화 또는 GATT 규범에 일치시켜야 하는 의무부담

- UR에서 농산물 교역의 대폭적 자유화가 합의될 경우 필수 농산물의 보호근거 상실 우려

#### (2) 우리나라의 협상목표와 제안내용

##### ① 협상목표

○농산물 수출국과 수입국간 협상이익의 균등한 반영

○식량안보 등 농업의 비교역적 요소를 GATT 규정에 명확히 반영

○최대한의 농산물 수입제한 및 농업보호 근거확보

○개도국의 구조조정 유예기간 및 정책선택의 탄력성 확보

##### ② 제안내용

○농업의 특수성 및 농산물 교역자유화의 한계인정

○세계 농산물교역 왜곡에 대한 수출국 책임강조  
○식량안보 등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(NTC) 유지에 필요한 보호조치의 허용

-최저 자급률 유지 및 최소시장 접근보장

○관세화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NTC는 제외

○현행 수량제한조항인 11조 2(c)조항 운용조건 완화

○위생검역규제의 국제기구 기준적용시 각국의 식습관, 환경여건, 기술수준의 차이 고려

○합의사항 이행시 개도국에 유예기간과 자율성 부여

### Ⅲ. 농산물그룹 의장초안

#### 1. 의장초안의 내용

(1) 모든 비관세조치의 철폐로 농산물 교역자유화 확대

○이미 자유화된 농산물의 관세는 현행수준 이상으로 올리지 않도록 GATT에 제의

○현재 남아 있는 수입제한품목은 모두 자유화하여 관세로 전환하되,

- 초기에는 국내가격과 국제가격과의 차이에 해당 하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토록 하나,

- 금후 협상에서 결정되는 기간내에 이를 상당수 준으로 감축

## (2) 국내 농업보조정책의 개혁

○농산물 생산 및 무역에 영향을 주는 국내농업보 조정책은 점진적으로 감축해야 하며

○허용되는 정책도 현수준 이상으로 확대할 수 없 고 GATT의 감시와 규제의 대상이 됨

○농산물 수출보조금의 급속한 감축

## (3) 개도국은 협상결과 이행에 있어서 특별대우 부여

○개도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농업개발정책은 허용 되나 국제무역에 영향이 없고 국내가격이 국제가격 보다 낮아야 하는 엄격한 조건임.

○개도국의 수입제한품목도 모두 자유화하되 유예 기간과 이행에 다소의 신축성을 부여함.

## (4)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(NTC)은 최소한도로 고려

○식량안보, 고용안정, 지역개발 유지를 위한 기초농산물에 대해서도 국내보조에서는 예외로 인정하 지 않고 국경보호에서 관세화를 할 경우에는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

## (5) 각국이 90년 10월 1일까지 납세자진신고서 (Country List)로 작성, GATT에 제출

○Country List의 내용

- 품목별 국내지지수준 및 보조측정기준(AMS)에 의한 산출량

- 감축약속대상에서 제외될 정책

- 모든 수입제한품목의 관세상당액(TE) 산출내역

- 품목별 최초쿼타 수준

- 이미 자유화된 품목의 현행세율(GATT에 양허대상)

- 최근 3년간의 각종 수출보조금 내역

## (6) 하반기 협상추진 방향

### ① 다자간 협상

○감축폭 및 감축기간에 대한 협상

- Country List 및 Offer List 제출직후 협상개시

○식품위생 및 동식물검역규제에 대한 협상

- 의장초안에 제시한 Framework를 토대로 협상추진

○약속이행 감시 및 약속사항 점검방안을 별도 협상

○GATT 관련규범 및 규정의 개정

- 의장초안 채택에 따라 개정보완이 불가피한 GATT 규정을 별도협상그룹(조문그룹, Safeguard 그룹 등)에서 검토

### ② 쌍무협상

○Offer List 내용에 대해 이해 당사국간의 쌍무 협상을 병행추진

## 2. 의장초안에 대한 각국의 입장

○미국, 케언즈, 북구 등 대다수의 국가가 의장초안을 협상기초(Basis)로 수용하는 것을 지지

○EC는 자국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음에 불만을 표시하면서도 수용여부에 대한 입장을 유보 하였으나 7.17 EC 각료회의에서 반대입장은 아니지만 종래 EC 주장이 반영되어야 함을 재강조.

○일본, 스위스, 오스트리아 등 수입국은 NTC가 적절히 반영되지 않았음에 강력한 반대의를 표명

○인도, 이집트 등 순수입개도국은 개도국 우대가 매우 엄격한 조건하에서만 인정되고 있음에 반발

### 3. 의장초안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

○의장초안은 기본적으로 수출선진국 입장을 기초로 작성되었고 수입국과 개도국의 관심사항은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않음으로 푼타 델 에스테 각료선언에 명시된 협상이익의 균등한 반영원칙과 합치하지 않음을 강조

○89.4 중간평가회의시 중요성이 인정된 NTC의 반영이 극히 미흡하며 각국의 농업발전 단계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음. 획일적인 농업개혁원칙 적용에 반대.

○위약적인 우리나라의 농업구조를 감안할 때 의장초안에 의해 결론이 날 경우 국내 농업 생산기반의 붕괴를 초래하게 되므로 합의결과의 국내적 수용이 불가능함. 따라서 원만한 협상진행 보다는 지장을 초래할 것임을 강조.

○'89.4 중간평가회의시 중요성이 인정된 NTC의 반영이 극히 미흡하며, 각국의 산업발전 단계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음. 획일적인 농업개혁원칙 적용에 반대

○위약적인 아국농업구조를 감안할 때 의장초안에 의해 결론이 날 경우 국내산업 생산기반의 붕괴를 초래하게 됨으로 합의결과의 국내적 수용이 불가피함. 따라서 원만한 협상진행 보다는 지장을 초래할 것임을 강조

○아국의 특별한 관심사항이 의장초안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이를 받아 들일 수 없음을 표명

○의장초안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을 명백히 제시

#### (1) 국내보조

-농업발전단계에 따라 정책목표 및 효과의 특수성을 인정하고

-허용대상요건의 완화, 농업개도국에 대한 허용 확대

-NTC 목적수행을 위한 정책은 감축대상에서 제외

#### (2) 국경보호

-NTC 품목은 관세화 대상에서 제외

-국내생산 세계품목에 대한 수입제한 인정(11조 2(c) 유지)

-관세화시 국내시장 충격 최소화라는 보완장치 마련 및 Rebalancing 인정

#### (3) 수출경쟁

-세계 농산물시장 왜곡의 근본원인은 수출보조금인 바 선진수출국의 책임을 강조

-수출보조금은 국내보조 및 국경조치에 우선하여 급속히 감축

#### (4) Country List

-Country List는 의장초안의 내용에 대한 완전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 제출

-Rule 이 없는 상태에서의 협상은 불균형되고 비효율적임을 강조

## IV. 향후 협상전망과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

### 1. 협상전망

○금번(7월) 재개된 제23차 농산물협상에서는 추후 협상을 계속한다는 조건하에 의장초안을 TNC 회의에 상정

○UR 협상 핵심과제인 농산물, 서비스, 지적소유권 분야의 협상이 전체협상의 원만한 타결과 연계되어 있다는 인식하에 사무국을 중심으로 최대한의 의견조정작업을 전개할 전망임(제네바 주재 협상상설 기구 설치, 10월 TNC 회의개최 등)

○UR 협상이 결렬되었을 경우의 GATT 체제에 대한 신뢰성의 저하는 물론 지역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될 것을 우려하여 협상막바지에 극적인 양보와 타결이 이루어질 수도 있음

○이 경우 미국의 EC의 공동농업정책의 근간이 되는 수입부과금, 수출보조금의 완전철폐나 급속한 감축주장에서 일보 양보하고 EC는 미국의 국내보조금 감축과 관세화 주장의 일부를 수용하는 선에서 타결될 가능성이 큼.

○이러한 과정에서 일부 수입국들이 주장하는 비교역적 고려사항(NTC)이나 개도국우대조치 등을 최소한으로 반영될 예상이며, 반영되더라도 그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 우리나라의 경우 합법적인 농산물 수입제한이 사실상 전무한 상태가 될 것으로 전망됨.

## 2.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

○우리 농업은 BOP 조항 졸업에 따른 수입개방 예시계획 수립 업무의 발생과 UR 농산물 협상의 타결(현재의 의장초안이 채택되었을 경우)로 농업의 완전개방과 수입자유화가 이루어지는 결과가 될 것임

○대부분의 국내 농업지원정책이 점진적 감축대상이 됨

- 기존 지원정책의 축소 불가피

[감축 및 규제대상이 되는 정책]

이중가격제, 가격안정대 및 수매비축제, 장·단기 저리 영농자금 지원, 차액보상, 생산조정보상 등 수입자유화 보완대책, 일부 농업구조개선대책

○수입제한품목의 자유화 및 관세전환 불가피

- 현재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모든 농산물(406개)의 자유화와 동시에 관세상당액 부과

- 그러나 관세상당액은 계속 감축됨으로서 경쟁력이 위약한 국내 농산물 생산기반에 심각한 타격 예상

- 특히 현재 수입이 거의 없는 품목도 일정량의 수입을 허용해야 하는 문제발생

○국민식량의 안정가격과 농가소득의 보호를 위한 농업정책의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

○특히 생산이나 특정품목과 연계되지 않는 작물 재배보상, 농어민연금제도, 생계비 보조, 교육의료비 지원 등 복지정책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해 질 것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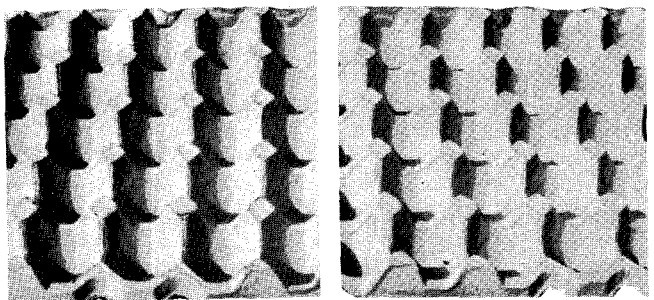
○수출유망품목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곤란

# 종이난좌 를 사용하시면 달걀의 위생 문제가 해결됩니다.

가로, 세로가 각각 9mm씩 늘어난 왕란·종란용난좌 판매 개시

## 규격 종이난좌의 특징

1. 신선도 유지
2. 부화율 향상
3. 질병예방
4. 파란방지



- 30개들이 왕란, 종란용 난좌
- 30개들이 보통난좌

**제일성형공업사**

공 장 : (0351) 63 - 7363 · 7097

연락처 : (02) 549 - 5287